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월 이용액 인상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동진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수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인상내역을 안내해 드리며, 어르신별 이용료 납부는 예전대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분	류	22년 수가	23년 수가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6,950	38,630	
	장기요양 2등급	34,210	35,760	
	장기요양 3등급	31,580	33,010	
	장기요양 4등급	30,140	31,510	
	장기요양 5등급(인지등급)	28,7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9,530	51,780	
	장기요양 2등급	45,880	47,960	
	장기요양 3등급	42,350	44,270	
	장기요양 4등급	40,910	42,770	
	장기요양 5등급(인지등급)	39,45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1,600	64,400	
	장기요양 2등급	57,070	59,660	
	장기요양 3등급	52,690	55,080	
	장기요양 4등급	51,250	53,580	
	장기요양 5등급(인지등급)	49,790	52,05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7,870	70,950	
	장기요양 2등급	62,870	65,720	
	장기요양 3등급	58,080	60,720	
	장기요양 4등급	56,620	59,190	
	장기요양 5등급(인지등급)	55,180	57,69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72,780	76,080	
	장기요양 2등급	67,420	70,480	
	장기요양 3등급	62,280	65,110	
	장기요양 4등급	60,840	63,600	
	장기요양 5등급(인지등급)	59,400	62,100	

*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합니다.
*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 쉬었을 때는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을 5일 50%를 산정합니다.
*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제31조의 '라-3'의 를 한도로 함)를 산정합니다.
* 공휴일은 본인부담금 30%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동진소규모노인종합센터